

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

(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별표 2 제4호의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·채무와 관계되는 자가 사용하는 것임)

※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

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 상 자	성 명		주민등록번호	-	
	주 소	(행정기관명:)			
신청내용	열 람 (), 초본 ()통				
	※ 아래의 초본사항 중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해야 합니다.				
	1.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(포함, 미포함) 2.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(전체 포함, 최근 5년 포함, 미포함)				
용 도 및 목 적			제 출 처		
개인 신청인	성 명	(서명 또는 인)	주민등록번호	-	
	주 소			전화번호	
법인 신청인	법 인 명		사업자등록번호	-	
	대표자성명	(서명 또는 인)	전화번호		
	소 재 지				
	방 문 자	성명 (), 주민등록번호(-),	직위()		
관 계 증 명 자 료	※ 아래의 “이해관계 사실확인서”는 변호사, 법무사 또는 행정사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. 1. 발급번호가 적혀있지 않으면 관계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발급번호를 기재 2. “채권자 등 인적사항”란 중 개인신청인에 대하여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생략하고, 법인신청인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략				
	발급번호: <제 호> 이 해 관 계 사 실 확 인 서				
	채권자 등 인적사항	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
		(대표자)성명		주민등록번호	
		(소재지)주소			
	채무자 등 인적사항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	주 소			
	이해관계 내 용	변제기일		채무 금액	
		채 무 등 내 용		기 타	
	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성 명: (인) 사무소명: 소 재 지: 연 락 처:				
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					
<유의사항> 1. 이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 2. 법인 방문자는 사원증(또는 재직증명서)과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. 3. 교부받는 초본에는 기재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며, 「주민등록법」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·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					